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 22) 상정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 2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 최 인 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하여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함.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한센정착농원이 관내에 없으므로 한센환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

고,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측면에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4조)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13조)

- 7~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 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의2)

-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 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5조)

- 시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함.

(안 제27조 및 서식)

-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함. (안 부칙)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조례 개정시 감면되는 금액은?</p>	<p>○ 관련 조별로 감면이 이루어 질 것이며, 건수로는 약 2,7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
의결 년월일	2007. 1. 23

제안년월일 : 2007년 1월 9 일

제안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을 종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완화하여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함.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나. 한센정착농원이 관내에 없으므로 한센환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측면에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4조)
- 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13조)
- 라. 7~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의2)

- 마.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5조)
- 사. 시세 감면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결정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함.(안 제 27조 및 서식)
- 아.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함. (안 부칙)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를 “중상이자 및”으로,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14등급”을 “14급”으로, “사용하는”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 제1호 나목중 “고급자동차”를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등록말소”를 “말소등록”으로 하고, 동항 나목중 “고급자동차”를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며,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자동차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이”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의 경우와 「철도법」 제76조”를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3조제2호중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신청인에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조례 제1814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및 조례 제1819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조례 제1998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및 조례 제2154호 부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7조 및 제9조 ----- ----- ----- ----- ----- ----- -----.</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u>중상이자</u> 및 <u>그 유족</u>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u>면제</u>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 <u>중상이자</u> 및 ----- ----- ----- ----- ----- ----- <u>면제</u>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u>중상이자</u>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를 면제</u>한다.</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p>	<p>②----- ----- ----- ----- ----- -----</p>

현 행	개 정 안
<p>1급 내지 <u>14등급</u>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u>사용하는</u>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p>	<p>---- <u>14급</u> -----</p> <p>----- <u>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u> -----</p> <p>-----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현행	개정안
<p>2. ~ 4. (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동차는</u>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생략)</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u>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u></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생략)</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u>경우에는</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시장이</u> ----- -----</p> <p>3. ----- ----- <u>자동차폐차업소</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u>감면</u>)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u>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제4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u>감면</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u>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u></p>

현 행	개 정 안
<p>추징한다.</p> <p>1. (생 략)</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3. ~ 4. (생 략)</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 -----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p>	<p>제25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p>

